



인천아시아아트쇼 2023 참가규정

1. 일반 사항

- '인천아시아아트쇼2023'은 별도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구성되며, 본 행사의 요강에 제시된 참가규정은 본 행사 참가단체(이하 참가자) 전원에게 전용된다.
- 운영위는 본 행사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이나 규정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운영위는 참가자의 참가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나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2. 공간 이용

- 전시 참가자는 사무국의 사전 승인 없이 자신의 전시공간을 타인에게 부분 또는 전체를 임대,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조직위는 해당 단체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전시장 내에 작품 보관 창고는 제공되지 않으며, 작품 포장지는 지정된 보관창고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

3. 부스 배정

- 부스 배정은 운영위가 결정권을 가지며, 운영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배정된 장소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 및 부스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 부스 위치 배정은 신청서 접수 확인 후 운영위 사무국에서 연락을 취하고, 희망 부스 확인 후 입금이 확정 되는 순으로 배정된다.
- 참가자는 장소가 허락하는 한 전시 부스를 작품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고, 조직위는 필요에 따라 출입문, 홀, 복도를 재조정할 권리가 있다.

4. 부스 운영

- 각 부스에는 갤러리 관계자가 상주하여야 하며, 관람 종료 시간을 정확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 부스 명패를 제외한 작품 캡션 및 부착물은 조직위가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 쾌적한 환경 제공과 작품 보호를 위해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전시장 내 판매 음식 제외)

5. 정보 이용

- 참가자는 출품 작품의 정확한 정보(작품캡션, 작품리스트, 작품가격 등)를 제공해야 한다.
- 조직위가 행사 진행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공공기관 실적 보고를 위해 작품 판매 현황과 같은 거래 정보를 참가자에게 요청할 시에는 참가자는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적시할 경우, 조직위는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6. 도록 제작

- 도록에 들어가는 작품 이미지는 부스 수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2페이지에 최대 3작품만 수록하며, 3작품 이상 제출 시 조직위 사무국에서 임의로 지정한다.
- 참가자는 도록과 관련된 독자적인 디자인 및 편집이 불가능 하며, 도록 디자인 권한은 조직위가 갖는다.
- 조직위는 도록용으로 제출한 이미지에 대해 별도의 동의 없이, 행사를 위한 홍보 및 광고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도록 제공 수량은 조직위 규정에 의거하여 배당되며, 추가로 도록이 필요할 경우 주관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7. 작품 설치

- 전시되는 모든 작품은 부스 벽에서 최소 20cm 내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부스 밖으로 작품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위반되는 경우 조직위는 안전을 위해 작품의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 전시 작품은 부스 내에만 전시되어야 하며, 통로와 출입구를 막아서는 안 된다.
- 참가자는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통로에는 작품을 전시할 수 없다.
- 참가자는 출품 작품의 정보와 현지통화 가격을 표기한 레이블을 부착해야 한다.

8. 보험과 면책

- 모든 참가자는 화재, 도난, 강도, 파손, 누수, 수해, 전시장 내의 시설 및 이동으로 인한 출품작품의 파손 및 위험에 대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 모든 전시품 및 관련 장비, 시설의 보호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조직위는 작품 분실, 손상,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조직위는 전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손해, 작품 운송과 보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참가자는 어떤 경우든지 참가자의 작품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참가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9. 보안

- 전시장과 전시지역은 24시간 경비가 이루어지며, 경비 서비스는 작품설치 첫날부터 작품반출 종료시 간까지 지속된다.
- 보안을 위해 작품설치가 시작된 날로부터 전시종료까지 작품 반출증 없이는 어떤 작품도 전시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10. 추가 조항

- 조직위는 참가조건으로 명기된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에게 전시확정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 참가자는 부스 사용료 외에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완납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조직위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시 일정을 연기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조직위는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주관처의 귀책 사유가 아닌 기타 상황으로 전시회 개최일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차기 전시회로 이월하여 집행한다. 이 경우 참가자는 조직위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